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7

발의연월일: 2020. 6. 9.

발 의 자:김원이·강훈식·기동민

김두관 · 신정훈 · 김수흥

민형배 • 윤준병 • 이정문

임호선 · 조오섭 · 천준호

최혜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지방세법」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21%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 21%에서 25%로 상향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율재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28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중 "79퍼센트"를 "75퍼센트"로, "21퍼센트"를 "25퍼센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	제72조(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
관한 특례) ① 제37조 및 제63	관한 특례) ①
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	
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	
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	
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	
세를 더한 세액의 <u>79퍼센트</u> 를	<u>75퍼 센트</u>
부가가치세로, <u>21퍼센트</u> 를 지방	<u>25퍼센트</u>
소비세로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